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5. 24 선고 2023가단732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4. 26.

판 결 선 고 2024. 5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1) 1층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493.5㎡, 2) 2층 중 별지3 건축물현황도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134.3㎡, 3) 3층 중 별지4 건축물현황도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71.4㎡를각 인도하고,

나.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1층 좌측에 이어진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㉢, ㉣, ㉤, ㉥, 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건물(나) 부분 가건물을 인도하고,

다. 20,480,000원을 지급하고,

라. 2023. 10. 1.부터 위 가.항 및 나.항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,6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희철

별지